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 의 자 : 강수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운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699호, 2023. 9.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현행 조례는 교육대상이 현직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안 제2조제1항)
- 나. 교육연수계획의 변경을 포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 다. 교육연수계획에 의원당선인 지원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3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를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수립한”을 “수립 또는 변경한”으로, “통지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후단 신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④ 의장은 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제3항제3호----- ----- -----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 ----- -- <u>수립 또는 변경한</u> ----- ----- <u>알려야</u> -----.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 --- <u>별지 제1호서식</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